

2003년도 골판지상자 단체수의계약 물품 지정공고

조합 기획조정팀 제공

우리조합에서 매년 골판지상자에 대한 단체수의계약물품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에 매년 신청해 오고 있는바, 2003년도에도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청 공고 제 2002-150호(2002.12.24)로 2003년도 단체수의계약물품 및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을 지정공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 조합 소관 물품인 골판지상자(담배·인삼 포장용 제외)는 전년과 같이 지정공고 되어, 2003년도 1월1일부로 시행된다.

I. 2003년도 단체수의계약지정물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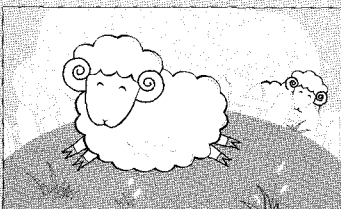
1. 총 칙

가. 목 적

이 총칙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 제9조의 2 및 동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단체수의계약물품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물품의 명칭 및 분류

- 1) 물품의 명칭분류는 원칙적으로 물품목록분류표의 품명식별번호(7단위, 소분류)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품목분류(8단위)에 의한다.
- 2) 물품목록분류표에 분류되지 않은 물품은 수요처규격 또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명칭과 규격에 따라 분류한다.
-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는 경우 여러품목을 군별로 묶거나 또는 물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분류할 수 있다. 다만, 여러물품을 군별로 묶어 분류한 경우에는 세부적인 개별물품명을 별도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체결 대상조합 및 지역

- 1) 계약대상 지역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조에 의거 전국 또는 서울특별시·광역시·도에 의한다.
- 2) "전국조합"은 구매기관이 소재한 구역내 조합원의 유무에 관계없이 전국을 대상구역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 3) "지방조합"은 해당 업무구역내에서 소요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당해 지역에 지방조합이 계약체결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연합회도 설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구매기관은 해당물품을 지정받은 지방조합중 1개의 지방조합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4)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연합회"와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한다.
 - ① 2개이상의 업무구역에서 소요로 하는 물품을 중앙기관이 계획구매하는 경우
 - ② 지방구매기관의 중앙기관 구매의뢰 및 중앙기관이 계획구매에 의거 중앙기관에서 구매하는 경우
 - ③ 구매기관의 업무구역내에 회원조합이 없거나 계약체결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합과 관련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라. 구매기관 등의 준수사항

정부 등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중소기업제품구매 계획중 "중소기업제품구매증대를 위한 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체수의계약 대상물품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마. 기타의 규정

단체수의계약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각종 법률과 이 총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물량배정, 수혜기준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공고한 "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2. 2003년도 단체수의계약 지정물품 : 146개 물품

2003년도 단체수의계약 물품내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www.smbago.kr)에 게재되어 있음

☞ www.smbago.kr → 정보자료실 → 법령공고 → 공고

☞ 중소기업청(기업진흥과)

전화번호 : (02) 503 - 7900 ~ 7931

<2003년도 단체수의계약 지정물품>

물품 목록번호	특정규격 및 번호	표준산업 분류번호	물 품 명	계약대상 지	조 합 명
8115-050		21211102	골판지상자(담배·인삼 포장용은 제외)	전국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21219101	골·판지상자(골판지상자는 담배·인삼 포장용에 한함)	전국	한국지함공업협동조합